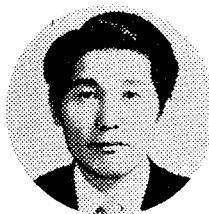


發明獎勵施策의 改善方案



金鍾協

<梨花女大教授·理博>

① 發明獎勵施策의 概觀

우리나라의 發明은 13세紀의 高麗青瓷 및 金屬活字를 비롯하여 14세紀의 測雨器, 16세紀의 거북船等 各各 人類史上 最初의 것을 發明하여 世界文化에 빛나는 業績을 남겼으나 이를 뒷받침할 傳統의이며 體系의인 發明獎勵施策이 없이 理念의이며 概念의인 形態로서만 持續되어 왔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發明保護를 위한 制度의 由來는 1908년의 舊韓末 時當의 日本統監府가 支配해온 韓國特許令公布에 따른 統監府特許局이 設置되고 當時倭帝의 彫壓下에서 國權回復의 救國運動으로서 民族指導者들에 의하여 特產獎勵와 發明獎勵運動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解放과 더불어 1946년에 실시된 特許法으로 우리나라 最初의 特許制度가 마련됨으로써 發明保護法의 制定을 보게 되고 發明獎勵運動이 試圖되어 왔으나 그結果는 그렇게 滿足스럽지 못하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政府는 우리 祖上들이 創案한 發明의 열을 子孫들에게 기리면서 汎國民의으로 發明思想을 鼓吹시키기 위하여 世宗大王때 世界最初의 測雨器가 발명되어 實用化되던 1442년 5월 19일을 「發明의 날」로 制定하여 1959년부터 1972년 까지 16년동안 紀念行事와 各種關係事業을 展開하여 왔었다.

이와같은 汎國民의 紀念行事가 정부의 各種關聯行事의 統廢合方針으로 1974년 3월 20일의 「商

工의 날」行事와 統合시켜 發明獎勵를 뒷받침하는 獨立性을 逸失하게 되었음은 못내 아쉬운 바있거니와 그 必要性에 대하여 다시한번 強調하고 싶다.

한편 發明考索이 權利로서 設定되었을 때 이것을 企業化하고 나아가 產業發展에 寄與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1958년 3월 5일 發明保護法을 制定하였는데 同法은 發明品의 生產, 輸出을 促進하면서 발명품을 普及獎勵하고 이를 통하여 發明家를 保護育成한다는 目的을 두었는데 外國에서도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는 劃期의인 發明獎勵施策으로써 이 法이 지니는 効力은 대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同法에 의하면 優秀한 發明, 考索品으로 인정될 경우 特許는 事業開始日로부터 5年間, 實用新案은 3년동안 營業稅, 所得稅, 物品稅 등 稅制面에서 廣範圍하게 免稅를 받을 수가 있었다.

또한 國內發明考索品의 生產 및 輸出에 필요한 原資材를 輸入할 경우에도 關稅를 減免함은 물론 生산에 필요한 金融支援과 資材의 供給까지도 優先의으로 마련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너무나 廣範圍한 對象에 適用시켜 運營上의 妙는 커녕 적지 않게 誤用되는 傾向이 나타나 國家租稅收入에 瞜跌을 가져올可能性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모처럼의 發明獎勵施策으로서의 助長行政面에서의 結實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1966년에 租稅減免規制法의 施行으로 遺憾스럽게 그 規制對象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機能을 回復하지 못하고 있음을 못

내 아쉽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록 발명보호법은 그 효력을 잃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1972년부터 국내의發明考案品을自主적으로開發하거나外國特許技術의消化改良을促進시키기 위하여技術開發促進法을制定施行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發明考案의企業화를위해稅制,金融面에서많은惠澤을줌으로써새로운次元에서의發明獎勵施策으로擡頭하게되었다.

이法도 역시發明考案의實施化에目的을두고企業에서의技術開發에필요한研究用試驗機資材와關聯投資에所要되는資金을自社에서技術開發準備金으로所得金額의一定率을積立하여필요할때 사용하는것에대하여는稅制上으로費用處理해주고있음은물론發明·考案을企業화하는데필요한施設資金까지融資해주는企業支援을목적으로하는發明獎勵施策이기도하다.

한편정부는1976년12월에政府組織法을改正하여工業所有權의國際化에對應할수있게1977년3월에特許廳을發足시킨바있으며發明·考案등의審查를強化하고國際特許情報를國內에서導入活用할수있겠음國際機構에加入하는등權利化段階의事前管理의側面에서發明獎勵施策을펴나고있다.

또한特許廳은汎國民의發明獎勵事業을展開하기위하여韓國特許協會의協贊으로國內에登錄된發明·考案中에서그技術內容이나國內外活用度가높은것을優秀發明으로嚴正하게選定하여褒賞함과아울러국내의우수한發明考案을海外에出願할수있도록補助金을支給하는등發明考案의事後的權利管理의側面에서發明獎勵施策을展開하고있다.

② 發明獎勵施策의 國內外事例

ⓐ 우리나라의企業支援施策

發明·考案을誘導하기위한發明獎勵支援制度로서租稅上의支援과金融上의支援으로大別할수가있는데租稅上의支援으로서는①技術開發準備金制度:所得金額의100分의20까지積立하여社內의技術開發,技術情報,技術訓練,研究施設,技術指導등에사용하고이經費는損

費로서認定해주는制度이다.

지난77년에74個業體에서87億원이던것이79年에는120個業體에서260億원을積立하여活用함으로써發明·考案을center으로한技術開發및投資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음을알수가있다.

② 新技術企業化投資稅額控除:特許를받은國內技術의開發成果를처음으로企業화하여그事業의固有目的에直接사용되는主된또는附隨되는機械에投資한경우投資金額의100分의8~10에相當한金額을所得稅또는法人稅에서控除해주고있다.

③ 企業의試驗研究費,開發費의損費認定

④ 研究所設立및研究機資材에대한投資額의100分의8~10에該當되는稅額控除

⑤ 試驗研究施設에대한初年度의100分의50의特別減價却認定

⑥ 優秀發明및特許技術輸出所得에대한所得稅免除등을들수가있다.

다음金融上의支援制度로서는①發明·考案된new技術을企業화하는데필요한技術開發資金과社內研究所設立에필요한資金등을產業銀行을통하여長期低利로서融資해줌으로써企業化事業및research所投資擴大를支援하고있다.

② 技術開發回轉基金은企業의特許技術開發및企業화와先進技術의導入促進및消費開良,엔지니어링技術能力의向上등에필요한資金으로支援하게되는데이미지난해12月에이資金의造成및management를擔當할技術開發株式會社設立을위한法的措置를끝내고政府,民間企業,IBRD借款등으로600億원의基金을造成오는4月부터技術開發에필요한資金을融資할수있는채비를갖추고있다.

③ 海外出願에대한補助方法으로서는外國出願의積極的인勸獎으로發明考案된優秀한特許,實用新案이外國에設權되어海外市場에서의紛爭豫防과輸出促進을圖謀하고자特許,實用新案의外國出願費用에대한一定額을補助하게되어있으며이는金融上의發明獎勵支援制度가된다.

ⓑ 外國의企業支援施策

日本의경우發明을위한民間企業에있어서의自主的研究開發을促進시키기위하여우선

稅制面에서는 研究開發費의 支出額에 대한 稅額控除制度, 新技術 및 新製品을 企業化하는데 사용되는 機械設備등에 대한 特別償却制度등으로 發明獎勵를 助成해주고 있는데 그 具體的 内容은 다음과 같다.

(1) 試驗研究費의 優待措置 : ①試驗研究費(人件費, 消耗資材費, 光熱費等)의 損金算入 ②開發研究用減價償却資產의 耐用年數短縮

(2) 試驗研究費增額에 대한 特別稅額控除制度 : 企業에서의 技術改良이나 發明·考案에 관계되는 試驗研究에 필요한 費用을 法人稅額 10%限度內에서 增加한 金額의 25%에相當하는 額을 稅額에서 控除해 주고 있다.

(3) 新技術企業化用의 機械設備등의 取得, 製造에 대한 優待措置 : 發明·考案한 新技術의 企業化用機械設備에 대하여 初年度에 取得價額의 3分의 1을 特別償却해 주며 國내에서 새로 開發한 新技術企業化用機械設備에 대해서는 固定資產稅의 課稅標準을 3年間 50%로 輕減시켜 준다.

(4) 技術輸出所得의 特別控除 : 國내에서 開發된 技術을 工業所有權으로 輸出 또는 他人에게 讓渡 및 提供한 경우 그 收入金의 100分의 70에相當하는 金額은 損金으로 算入해 주고 있다.

한편 金融面에서의 發明獎勵施策으로서는

(1) 發明實施化試驗補助金制度 : 優秀한 發明考案의 見本을 製作하거나 이에관한 試驗研究의 實施를 助成하기 위한 試驗補助金과 發明實施化試驗을 한者에 대하여 새로운 增設을 助成하기 위한 設備補助金으로 나누어서 支援하고 있는데 모두가 發明·考案의 實施化를 促進시키는데 目적을 두고 있다.

(2) 重要技術研究開發費補助金 : 發明·考案된 技術의 向上을 促進하기 위하여 企業化에의 技術研究, 企業化試驗 및 機械設備등의 試作에 補助金으로 支給하는데 ①應用研究補助金 ②企業化試驗補助金 ③機械設備등 試作補助金의 3가지種類가 있다.

(3) 中小企業技術改善費補助金制度 : 發明·考案에 의한 新技術을 活用한 中小企業製品의 品質向上, 生產性向上, 新製品의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試驗研究 및 試作에 補助金을 주고 있다.

(4) 新技術應用研究費補助金制度 : 發明·考案을 活用하여 社會間接施設을近代化하는데 필요

한 試驗研究에 支給되는 補助金이다.

(5) 外國出願補助金制度 : 優秀한 發明·考案을 海外에 進出시켜 輸出을 促進시키기 위한 支援施策으로서 企業이 優秀한 發明·考案을 自國에 特許, 實用新案으로 出願하고 8個月 以內에 外國에 出願할 때 所要되는 費用의 50%를 補助해 주고 있다.

③ 發明獎勵施策의 改善方案

先進國에서의 發明獎勵施策은 日本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特許制度의 發展에 맞추어 運用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特히제도가 100年餘의 歷史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個人, 企業 나아가서는 모든 國民이 發明에 관심을 갖고서 새로운 것을 創案해 내도록 政府가 밀거름을 뿌려주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歐美先進國보다 모든面에서 特히제도가 뒤떨어졌던 19世紀에 西歐의 文物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繫迫한 것은 產業發展을 촉진시키는 原動力이 되는 特許制度의 導入에 있음을 깨닫고 1885년부터 明治維新的 一環으로 發明獎勵를 위한 이 제도를 實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背景을 土台로 하여 日本特許制度 1世紀가운데 黃金期를 누리고 있는 것은 2次世界大戰以後부터 本格적으로 發明獎勵施策을 펴서 관계사업을 主導할 수 있는 民間團體의 育成과 事業活動基盤의 構築을 위해 政府가 基金을 出捐造成하고 이를 財源으로 하여 관계단체가 主軸이 되어 全國民, 全企業을 대상으로 한 發明獎勵事業을 展開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技術立國으로 成長하게 되었던 것이다.

今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일본의 成功的 發明獎勵施策을 發展의으로 援用하여 政府次元에서 推進해야 할 性格의 發明獎勵事業은 모두 關係民間團體에 移讓하거나 새로이 發明振興公團과 같은 政府代行機關을 別途로 創設하여 計劃性있고 能動的인 事業을 展開하도록 하되 所要財源을 發明獎勵基金으로 政府가 造成해 줌으로써 長期의인 眼目에서 發明考案을 國家產業發展과 直結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 7面에서 계속 —

따라서 現時點에서 發明獎勵施策의 具體的改善方案을 提示해 보면

첫째 國民의 發明意識은 底邊으로부터 擴散하여 漸次 段階的으로 高揚시켜 나간다는 目的事業을 効率的으로 展開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財政的 支援을 받은 民間團體가 政府를 代行하여야 할 것인바 현재 發明獎勵民間團體로서 事業活動을 벌이고 있는 韓國特許協會에서 그 機能을 強化하여 汎國民의 運動과 行事를 알차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많은 財源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日本의 發明協會에서의 경우와 같이 政府의 資金造出基盤위에서 이와같은 龐大한 事業이 可能視된다고 본다.

— 27面에서 계속 —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 古典形態의 中共特許制度는 우리經濟에 分明히 重大한 意義가 있다고 많은 討議에서 認定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克服해야 할 아래와 같은 많은 問題가 아직도 가로놓여 있다.

1) 中共은 파리協約에 加入할 것인가?

2) 中共 國內出願과 外國出願사이의 關係를 어떻게 發展시킬 것인가?

3) 特許制度가 科學者들의 마음에 들것인가?

누구나 理解하듯 10億人口를 갖고 文化革命 이후 西方에 눈을 둘려서 生活水準을 높이려는 最後의 大市場인 中共은 外國의 投資가 切實히 必要하다.

企業家들은 自身들의 投資에 대하여 補償받을 수 있고 利益을 發生시킬 수 있는 特許制度가 完成될 경우 合作投資事業에 參與할 것은 틀림없다.

둘째는 企業에서의 發明·考案을 奬勵해 나간다는 側面에서 現行의 稅制, 金融面에서의 支援이 그 要件이 까다롭고 制限의이며 雜細한 中小企業이나 發明家에게는 惠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여기에는 發明振興公團과 같은 公的機關을 創設하여 發明獎勵 및 實施化支援業務을 効率的으로 一元化하는 方案도 考慮해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推進해야 할 發明獎勵施策은 多種, 多樣, 多急함을 要하고 있기는 하나 이제는 我們가 技術立國의 바탕위에서 世界各國과 國際競爭을 해나가려면 앞으로 새로운 視角에서 發明獎勵施策을 鼎立하여 關聯事業을 展開하지 않으면 아니될 때가 왔다고 하겠다. ♦

이러한 事項은 우리 西獨經濟의 關心事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自身들의 關心事이다.

世界市場에서의 競爭이 加熱되어 各 工業國家의 經濟界는 새로운 市場開拓에 廉心하게 되었다.

結論은 效果의이고 信賴할 수 있는 特許制度가 存立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이 그러한 制度를 成立시키기를 진정으로 希望할 뿐이다. ♦

(案) — (内)

科學技術處長官 및 特許廳長招請會員朝餐懇談會開催

昨今 繼續되는 國際環境變化에 適應하면서 持續的으로 輸出을 伸張시키기 위해서는 國내企業의 技術開發投資擴大로서 國際競爭力を 培養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本會는 80年代 政府의 科學技術 5個年計劃推進에 있어서 民間企業의 技術開發投資支援을 비롯하여 特許技術의 國內外的保護를 위한 工業所有權 4法改正의 背景등 政府施策을 聽取함으로써 이에 관한 企業對策을 세울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고자 李正五 科學技術處長官과 李相燮 特許廳長을 特別히 招請하여 다음과 같이 朝餐懇談會를 開催하오니 부디 參席하시기 바랍니다.

日 時 : 1981年 4月 23日(木) 07:30

場 所 : 全經聯會館 20層 오카도룸

※ 參席與否를 必히 本會事務局(783-2237~9)으로 連絡하시기 바랍니다.